

2020년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8. 31.(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헌영, 박정인, 백대용(분과위원장),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3.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4,554건(안전번호 제 2020-105878호~제2020-107610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05878호~10587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552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최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일본 ‘후지TV’, 일본 ‘NTV’, ‘넷플릭스’, 미국 ‘HBO’, 미국 ‘FOX’, ‘유니버설 픽처스’, ‘월트디즈니’, ‘워너브라더스’, ‘Microsoft Corp.’, ‘한글과 컴퓨터’, 영국 ‘BBC one’, 영국 ‘Channel4’, ‘OCN’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4,554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05878호~제2020-107610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제2020-105878호~105879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105878호~10587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B 위원: 불법복제한 만화를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시정권고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05878호~10587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05880호~10761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덤디덤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0595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가수 '(여자) 아이들'의 2020. 8. 3. 발매앨범 덤디덤디 (DUMDi DUMDi)의 수록곡 '덤디덤디 (DUMDi DUMDi)' 외 99곡을 9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게임 '토탈워: 삼국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05990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토탈워: 삼국지 Total War: THREE KINGDOMS (2019)'를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19. 5. 23. 출시하여 59,800원에 판매되고 있음. 크리에이티브 어셈블리사에서 제작하였고, 세가 주식회사에서 배급하고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 'Adobe Master Collection CC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06078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Adobe Master Collection CC 2020을 99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Adobe Master Collection CC 2020은 기존의 CC 2020 버전을 한

꺼번에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2020. 1. 31. 출시되었음. Adobe 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Adobe Creative Cloud라는 이름으로 Creative Suite Master Collection, Design & Web Premium, Design Standard, Production Premium 등의 모든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월 62,000원에 이용할 수 있음.

(방송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2: 대항해 시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06886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2: 대항해 시대(2019)'를 254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19. 12. 19.부터 현재까지 방영 중인 '채널A' 예능 프로그램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회차는 2020. 8. 6. 방영한 최신 회차임.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07534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2019)'을 154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0. 7. 29.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영화로, 감독은 변호인, 강철비1의 양우석, 출연 배우는 정우성, 곽도원, 유연석이고, 누적관객은 2020. 8. 26. 기준 177만 명임. 2020. 8. 18. VOD가 출시되어 8월 4주 영화 VOD 부문 1순위를 기록하였음.

(영화 '반교: 디텐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07571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대만 공포 영화 '반교: 디텐션'을 152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저작물은 2020. 8. 13. 개봉하여 현재 상영 중으로, 누적관객수는 2020. 8. 26. 기준 약 3만명임. 2017년 대만에서 출시한 동명의 게임이 원작인 영화로 2019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매진된 영화이며, 2019 금마장 5관왕, 22회 타이베이영화제에서 대상과 최우수영화상을 포함해 6관왕을 거머쥔.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105880호~10761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105880호~107610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동의함.
- B 위원: 이견 없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05880호~107610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05878호~107610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

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8. 31.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권현영

위원 박정인

위원 이성엽